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262
----------	-------

발의연월일 : 2026. 6. 15.

발 의 자 : 이개호 · 황명선 · 이정문
정진욱 · 조계원 · 정준호
윤준병 · 이학영 · 소병훈
서삼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복리 증진과 전력사업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 및 발전사업자의 자기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지원금의 산정 단가는 지난 2006년 이후 20여 년간 한 번도 상향되지 않아 그동안의 물가 상승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사업의 실효성이 크게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기금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의 규모를 산정할 때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원자력·수력·양수 발전사업자 지원사업의 규모 산정 기준을 기존 시행령의 기준 대비 2배로 상향하여 법에 명시하여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수준을 현실화하고 전력산업에 대한 주민 수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조

및 제13조의2).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지원금의 결정기준에는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의2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에 따른”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로, “관한”을 “관해 필요한”으로 한다.

③ 발전형태별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연간 규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산정된 금액 이내로 한다.

1. 원자력: 전전년도 발전량(kWh) × 0.5(원/kWh)
2. 수력: 설비용량 1천킬로와트당 1,000만원
3. 양수: 설비용량 1천킬로와트당 100만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p>③ <u>제1항에 따른</u> 지원사업의 종류·규모, 지원대상, 지원방법 등에 <u>관한</u> 사항은 발전소의 종류·규모·발전량, 가동 기간, 주변지역 및 발전사업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u>당 100만원</u></p> <p>④ <u>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u> <u>규정한 사항 외에</u>----- ----- -----<u>관해 필요한</u>----- ----- ----- -----.</p>
--	--